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39
----------	-------

발의연월일 : 2025. 11. 25.

발 의 자 : 소병훈·주철현·안태준
박희승·허영·김교홍
민형배·이인영·윤준병
이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3만 7,563개 행정리 가운데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약 73.5%에 이르고 있어 식품사막(지리적 요인으로 식료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농어촌 공동체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과 제도는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과 관련된 식품지원사업으로 중점 추진되어왔음. 최근 식품사막의 증가로 식품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먹거리 정책의 범위와 대상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대상에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역 먹거리지원센터가 식품 구매환경 개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리적 요인 등으로 식품 구매가 어려운 지역 주

민의 식품 구매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먹거리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의3 신설, 제23조의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999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식품접근성”이란 취약계층이나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안전하고 신선하며 균형 잡힌 식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정책적·사회적 조건을 말한다.

제23조의6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

4의2.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구매환경 개선 지원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999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의2. (생략) <u><신설></u> 9. (생략) 제23조의6(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 6. (생략) <u><신설></u> 7. ~ 9. (생략)	법률 제20999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정의) ----- -----. 1. ~ 8의2. (현행과 같음) 8의3. <u>“식품접근성”이란 취약계층이나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안전하고 신선하며 균형 잡힌 식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정책적·사회적 조건을 말한다.</u> 9. (현행과 같음) 제23조의6(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u>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u> 7.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4. (생 략) <u><신 설></u> 5. (생 략) ④ ~ ⑥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구매환경 개선 지원</u> 5.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	---